

『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4월 20일

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건
 - 대형국책사업인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
 - 동사무소의 시설 노후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 해소
- 상공회의소 소유토지와 골프장 추진 예정부지(시유지) 교환건
 -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포츠·레저분야의 골프장 추가 조성계획에 의거 구미상공회의소가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계획 사업구역내에

포함된 시유지(장천면 상림리 산 81-3번지의외 2필지)와 사유지(구미상공회의소 소유 선산읍 노상리 산 6번지의외 3필지)를 교환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□ 취득재산

-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
 - 토 지 : 2필지 975.1m²
 - 예정가격 : 648,046천원(공시지가 기준)

□ 교환재산

- 상공회의소 소유토지와 골프장 추진 예정부지(시유지) 교환
 - 교환예정 市有재산
 - 토 지 : 3필지 234,376m²
 - 예정가격 : 500,246천원(감정가 기준)
 - 교환예정 私有재산
 - 토 지 : 4필지 568,462m²
 - 예정가격 : 393,750천원(감정가 기준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, 제39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제4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지침(행자부)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취득재산 1건과 교환재산 1건 등 2건입니다.

- 먼저 취득재산입니다. 취득재산은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써 동사무소의 시설노후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제106회 임시회시 2필지(원평동 1037-55, 1037-56번지)를 취득하는 것으로 동의하였으나 향후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11회 임시회시 기 동의된 부지인근 토지(원평동 1037-13, 1037-54번지) 2필지를 추가하여 총 4필지 1,476㎡를 취득(매입) 하는 변경안을 다시 동의하였으나 감정가와 현시가의 가격차이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새로운 신축 예정 부지인(원평동 1026, 1026-12번지) 2필지 975.1㎡를 취득(매입)하는 변경안입니다.
- 다음은 교환재산입니다. 교환재산은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열면서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제111회 임시회시 시유지 4필지 337,603㎡와 사유지 4필지 568,462㎡를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동의하였으나 교환재산에 대한 감정결과 한쪽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/4인 75%에 미달한 관계로 교환이 불가하여 당초 교환대상인 시유지 4필지 중 전체면적의 31%에 해당하는 장천면 상림리 산81-1번지 면적 103,227㎡ 1필지를 제외한 3필지 234,376㎡와 사유지 4필지 568,462㎡를 교환하는 변경안입니다.
- 변경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교환 경우에는 늘어나는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지여건, 향후 인근지 개발가능성 및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취득 및 교환재산으로서의 적합성 등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